청렴은 당신의 자존심입니다

서대문구

수신자 내부결재
(경유)
제목 『120교통불편신고』 행정처분7월 (법인택시- 심의회)

1.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으로 교통민원신고된 운송사업자 및 종사자에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7조1항(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), 제49조(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)와 관련하여, 행정절차법 제21조(처분의 사전통지)의 규정에 의거 처분사전통지한 후,

2. **『서대문구교통민원신고실무위원회(2015.7.23)』**의 심의 결과 및 서울시 조사. 단속 과정에서 '행정처분확정'으로 이첩된 사항을 반영하여,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6조(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 액수),제49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 하고자 합니다.

ㅁ **행정처분 내역**

계(건)	운전자과태료(과징금)		자진납부		주의	불문	처분불가	재심
	건	금액(천원)	건	금액(천원)	건	건	건	건
47	21	2400	0	0	15	6	3	2

첨부 1. 「교통민원신고실무위원회」심의 결과서 1부
2. 회의록 요약서(비공개) 1부
3. 심의조서 1부. 끝.

주무관 노광준 운수지도팀장 代김창열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안전건설교통국장 07/24 이명균

협조자

시행 교통관리과-18965 ( ) 접수 ( )

우 120-703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로248 / http://www.sdm.go.kr
전화 330-1875 /전송 / / 부분공개(6)